

## 적치물(퇴비) 처리 요청 공고

상촌면 노인회분회 내 적치되어 있는 누룩퇴비가 장기간 관리 소홀로 인한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여 2012. 6. 22.까지 이동조치 요청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자께서는 빠른시일 내에 이동조치해 주시고, 공고기간 내 미처리 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의 처리하겠으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 적치물건 : 누룩퇴비 토곡(한밭비료), 약 80포 정도
- 적치현황 : [사진 붙임]
- 공고기간 : 2012. 6. 22. ~ 6. 28.
- 문 의 처 : 상촌면 산업팀(전화 : 740-5813)

2012년 6월 22일

상 촌 면



## < 상촌면 노인회분회 내 적치물(퇴비)>

1. 1차 제거요청(안내문) : 2012. 6. 22.
2. 2차 제거요청(공고문) : 2012. 6. 28.

